

## 反射鏡

註: 지난 여름철 각 언론기관은 영상과 글,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강산을 여지없이 오염시키고 있는 국립공원등 자연공원 행락객들의 무절제한 자기쓰레기 안치우는 행위에 대한 비난과 관리공단 미화원의 일손부족, 버리는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처리문제 등을 들고나와 차츰 버리는者에 대한 증오가 집중되었다. 8월에는 여러신문과 잡지에서 원고청탁도 많았으나 손不足으로 모두 응하지 못했는데 이중 두곳것만 反射鏡에 담아 되돌아 본다.

## 기초조사 마친후 自然休息 을 위한 部分統制를……

인구팽창과 경제개발문제가 언제나 붙어다니는 산업사회에서 국립공원같은 자연공원을 자연그대로 보존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 그나마 관계부처와 온 국민의 협력, 강력한 단속이 없다면 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난 7월29일 신문과 방송은 내무부가 종합해서 밝힌 國公立공원의 생태계보호를 위해 특정구역의 출입을 3년동안 금지하는 「自然休息年制」 실시계획을 크게 보도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논평도 덧붙였다.

현재 국립공원 두곳(경주-한라산), 도립공원 20곳, 군립공원 26곳등 모두 48개 자연공원과 국민관광지 108곳, 유원지 501곳은 내무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18개국립공원은 건설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관리공단이 창립되기 전에는 모든 국립공원은 건설부 위탁으로 각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했었다.

관리공단은 그동안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원시성등 특별보호를 요하는 곳)등 32개소에서 자원조사를 엄밀히 실시, 곧 끝낼 단계이며 지난 5월 28일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각 관리소에 시달한 바 있다. 내무부가 국립공원관리청 소관의 공원까지 일괄해서 앞질러 7월 29일 발표한 내용에는 설악 지리 덕유등 3개 국립공원밖에 없어 아쉬웠는데 지난 2일 강원도가 발표한 내용에는 도내의

설악 오대 치악등 3개 국립공원과 경포대 낙산 태백 등 3개 도립공원도 포함되어 아쉬움이 약간 해소되기도 했다.

이미 공단은 창립후 3년동안 매년 3월 1일~5월 31일까지 3개월과 11월 15일~12월 15일까지 1개월, 도합 4개월동안 동-식물번식및 산불예방을 위해 탐방객을 입산통제해왔다. 이는 통계상 식목일 전후와 낙엽기에 산불이 찾고 자연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작년 한햇동안 공단이 단속한 건수는 4천 275건인데 이중 156건은 고발하고 167건은 원상복구, 3천952건은 계도조치했다. 그러나 생긴지 얼마안되는 관리공단은 예산부족으로 정원 129명인 청원경찰을 20명 정도밖에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도 탐방객도 해마다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많은 단체행락을 비롯한 단체등산, 마이카족, 하이커(도보여행자)들의 자연탐방이 성수기에 집중, 자연훼손이 극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는 한방법으로서의 자연휴식년제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일반 행락객의 인근 관광지분산책과 입산예약제 도입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국립공원은 새소리를 듣기 힘들다. 새들이 알을 품을 곳이 없을 정도로 등산로가 아닌 곳을 자기 과시하듯 쏘다니고 植生을 마구 훼손하고 있어서다. 또한 희귀동-식물이 발견됐다는 정보만 알려지면 밀렵꾼과 채집꾼이 암약하기 때문이다.

자원보존은 물론 자원조사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먼저 자연보존지구만이라도 울타리를 쳐서 절대 보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려면 공원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할 줄로 안다. 내무부 환경처등의 적극적 상호업무협조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훼손된 자연자원을 회복시키는 자연휴식년제는 「모든 국민은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5조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실시방법등 다각적인 검토와 種의 번식상황을 매년 짐계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마친후 시행하길 바란다. (吳判龍 한국국립공원협회 사무국장)

90년 8월 7일 세계일보 「발언대」

# 자연공원을 철저히 보호하자

놀이型人波는 國民관광지등으로 分散誘導해야……

자연이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스스로 있는 모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 위에서 생물권이라고 말하는 지상 10km와 지하 수km에 이르는 공간에 존재하는 만물을 지칭하는데 그 공간에서 지구상의 생물들은 서로 의존·변화하면서 일정한 조화와 질서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 1월15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인간생존을 위한 환경포럼」은 인조화학물질이 원인이 된 오존층파괴, 지구의 이산화탄소 상승(매년 0.5%), 수질오염 및 산림훼손, 환경악화로 매일 약 100종의 생물이 지구상에서 멸종돼 생태계 균형을 깨고 있음을 전인류에게 경고했다.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3천만종의 생물의 공동의 것”임을 우리는 냉철히 반성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 여기고 관계자는 더욱 분발, 홍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효시는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이 국립공원 제 1호로 지정된데서 비롯된다. 이에 앞서 1967년 3월 3일에 우리나라라는 처음으로 공원법을 제정 공포했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1897년에 파고다공원이 생기고, 이어 남산공원, 뚝섬유원지가 생겼으며, 그 무렵 평양에도 서기산공원, 모란봉공원 등 오늘의 도시공원이 생겼으나 자연공원은 없었다. 최근 일본공원관계 자료에서 발견한 바, 일제는 백두산과 금강산 등을 그들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2차대전으로 무산되었다 한다.

1980년 1월 4일 공원법은 발전적으로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었다. 오늘의 10장61조 부칙 5조로 된 자연공원법은 세 차례의 개정을 거듭했으나 아직도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서는 지구설정의 목적제시 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과 1987년 7월 1일에 국립공원 전담 관리청으로 창설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유연성있는 자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주장하는 사계권위 학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 20개소(국토면적의 3.79%, 바다면적 제외) : '89년도 총탐방객 3,921만 7

천명), 도립공원 20개소(국토면적의 0.73%), 군립공원 26개소(국토면적의 0.26%)가 지정되어 보존을 우위로 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총면적은 국토대비 4.78%이다. 미국은 50개 국립공원 면적이 국토대비 6%정도.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1934년 세도나이까이 등 8개 국립공원을 지정한 후 현재 국립공원 28개(국토대비 면적 5.43%), 국정공원 54개(국토대비 면적 3.41%), 都·道·府·縣립공원 299개소(국토대비 면적 5.27%)로 자연공원의 총면적은 국토대비 14.1%이다.

공원면적이 광대한 미국은 자연공원에서 발생되는 자연화재마저 자연활동으로 간주, 시설물에만 진화 할뿐 자연소화를 기다려 그 자리서 새로운 동·식물이 번식되는 생태계순환을 관찰하는 등 국토와 여건이 다른 우리로선 흥내를 넣 수 없고 국립공원에 관련된 공원수만도 354개소나 된다.

일본도 1957년 경제개발 의욕이 왕성한 시기에 각 성청의 거센 반발속에 기존의 국립공원법 덕분에 현재의 자연공원법이나마 제정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 자연공원의 지정목적은 우리나라와 도·군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규정에 의해 지정, 깨끗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게 자연의 보호와 적정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공원보호에 관련되는 주요법은 자연공원법, 산림법, 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관련법이 복합되어 있다. 국토의 두뇌에 해당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공원의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근 강력한 부분통제와 적정수요에 대한 검토가 관계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 입구에만 집중되는 자연탐방 목적 외의 놀이형 인파를 108개소의 국민 관광지와 501개의 자연발생유원지 중 관리가 쉬운 곳을 선택하여 분산유도하는 정책도 내무부와 건설부가 주동되어 세웠으면 한다.

(吳判龍 한국국립공원협회 사무국장)  
(우풍소식 두레 90年 9월호 권두제언)